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142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현행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엄격한 여비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·방법을 정함(안 제2조, 별표 1)

나.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규정 신설(안 제5조)

- 1)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
- 2) 여비 부정 수령 행위 명시
- 3) 환수절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, 「공무원 여비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0. 15.~11.6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,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"을 "군수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"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"「공무원 여비 규정」"을 "영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별표"를 "별표 2"로 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

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,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존 제5조)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영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행정안전부와”를 “인사혁신처장과”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인사혁신처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2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(기존 별표) 비고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4호(기존 제5호) 중 “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를 “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</u>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"월액여비"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 <p><u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</u> ① <u>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</p> <p><u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</u>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<u>별표</u>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</u>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거창군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, 월 지급한도액은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</u> ① <u>군수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<u>영</u>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</p> <p><u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</u>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<u>별표 2</u>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<u>제5조(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)</u>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

제5조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준용)

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이 조에서 "영"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"소속 장관"은 각각 "군수"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"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"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4의2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.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영 제29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짓으로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

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 수령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알리고,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준용)

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"소속 장관"은 각각 "군수"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"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"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4의2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.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영 제29조제1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

같은 조 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" 및 같은 조 제4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"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(생략)

은 조 제2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"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"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<신 설>
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지급 대상	지급 방법
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	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,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.
	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(내근 직원 제외)	
	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	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	

- 가. 지급 대상: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,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(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)
- 나. 지급액: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,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, 업무의 특성,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